

(報告)

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1061
------------	------

2001 7 6

1. 제안이유

- 이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성남시의회의 발전 및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자 의정동우회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성남시 의정동우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는 목적을
- 동조례 제2조 구성 및 운영은
 - 1) 의정동우회 회원은 성남시의회의 전·현직 의원으로 구성
 - 2) 의정동우회를 사단법인으로 하고 사무소는 의회 소재지에 두며
- 동조례 3조의 사업은
 - 1) 지방자치제도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
 - 2)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의정 홍보
 - 3)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연구등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음,

- 동조례 제4의 보조금 교부의 건은 성남시가 의정동우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조례 제5조의 운영 규정에는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동우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

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 및 성남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동우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현안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바람직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.